
2026학년도 서울교육대학교

대학입학 전형계획 주요사항

※ “2026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 주요사항”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 사항은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, 추후 발표되는 『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(수시모집 및 정시모집)』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2024. 4.



서울교육대학교

I. 전형별 모집인원

(단위: 명)

모집 시기	전형 유형	전형명		2026학년도	비고
수시	학생부 교과	학교장추천전형		40	
	학생부 종합	교직원성우수자전형		100	
		기회균형 특별전형 I	국가보훈대상자전형	5	
			농어촌학생전형	10	
		기회균형 특별전형 II	기초생활수급자등전형	19	
	장애인등대상자전형		11		
	기타	기타 특별전형	재외국민특별전형	7	
			북한이탈학생전형	3	
	소계			195	
	정시 (나군)	수능 위주	일반전형	정원 내	160*
기초생활수급자등전형			정원 외	수시모집 미충원인원 발생 시 이월 모집	
장애인등대상자전형					
재외국민특별전형					
북한이탈학생전형					
소계			160		
합계			355		

Ⅲ. 전형요소별 배점 및 전형단계

모집 시기	전형 유형	전형명		전형요소 반영률 및 전형단계
수시	학생부 교과	학교장추천전형		1단계(2배수): 학생부교과 성적 100% 2단계(1배수): 교과 성적 80%+면접평가 20%
	학생부 종합	교직원성우수자전형		1단계(2배수): 서류평가 100% (학교생활기록부) 2단계(1배수): 서류평가 50%+면접평가 50%
		기회균형 특별전형 I	국가보훈대상자전형	
			농어촌학생전형	
		기회균형 특별전형 II	기초생활수급자등전형	
			장애인등대상자전형	
	기타	기타 특별전형	재외국민특별전형	일괄합산: 면접평가 100% (학생부 서류 P/F)
			북한이탈학생전형	일괄합산: 면접평가 100%
정시 (내군)	수능 위주	일반전형		1단계(1.5배수): 수능성적 100% 2단계(1배수): 수능성적 80%+면접평가 20%
		미충원에 의한 이월 전형		

IV. 수능최저학력기준

모집 시기	전형 유형	전형명	수능최저학력기준		
수시	학생부 교과	학교장추천전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(사회/과학) 4개 영역의 합 10등급 이내 ※ 탐구영역은 2과목의 평균을 반영하고, 제2외국어/한문은 반영하지 않음 		
	학생부 종합	교직원성우수자전형			
		기회균형 특별전형 I	국가보훈 대상자전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(사회/과학) 4개 영역의 합 13등급 이내 ※ 탐구영역은 2과목의 평균을 반영하고, 제2외국어/한문은 반영하지 않음 	
			농어촌 학생전형		
		기회균형 특별전형 II	기초생활 수급자등 전형		
			장애인등 대상자전형		
		기타	기타 특별전형		재외국민 특별전형
	북한이탈 학생전형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(사회/과학) 4개 영역의 합 13등급 이내 ※ 탐구영역은 2과목의 평균을 반영하고, 제2외국어/한문은 반영하지 않음
정시 (나)군	수능 위주	일반전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영어 3등급 이내, 한국사 4등급 이내 		
		미충원에 의한 이월 전형			

V. 정시전형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

영역	국어	수학	탐구(2개 영역)	합계
배점(점)	266.7	266.7	266.7	800
비율(%)	33.3	33.3	33.3	100
점수 활용지표	표준점수			

※수능 영역별 환산점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

VI. 지원자격

모집 시기	전형 유형	전형명	지원 자격
수시	학생부 교과	학교장추천전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가', '나'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가. 2026년 2월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(조기졸업예정자 제외) 나. 소속 고등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※ 추천 인원은 고교별 재적인원 기준 3% 이내 (고3 재적인원 * 0.03,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올림)
	학생부 종합	교직원성우수자전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(조기졸업예정자 제외)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
		국가보훈 대상자전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가', '나'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가.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(조기졸업예정자 제외)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.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3조 제2호의 '국가보훈대상자'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
		기회균형 특별전형 I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가', '나'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3조에 따른 읍·면 지역 및 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에 소재하는 중·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(조기졸업예정자 제외) 나. 「지방자치법」 제3조에 따른 읍·면 지역 및 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에서 중·고등학교 재학 전 기간 동안 지원자와 부모가 모두 거주한 자(사망, 이혼,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부 또는 모만 기준으로 함) ※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 학교 모두가 반드시 읍·면 소재 학교이어야 함(동일 읍·면이 아니라도 가능함)
		능어촌 학생전형	

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부모·학생의 거주지는 학교 소재지와 동일한 읍·면이 아니라도 가능함 ※ 재학 당시의 행정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재학 당시 읍·면이었던 행정구역이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등으로 개편된 경우에는 당해지역을 읍·면으로 인정함 ※ 농·어촌소재 특수목적고(과학고, 영재고, 국제고, 외국어고, 예술·체육계열 고등학교 등)는 지원할 수 없음
		기회균형 특별전형 II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가', '나'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가.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(조기졸업예정자 제외)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.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		장애인등 대상자전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가', '나'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가.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(조기졸업예정자 제외)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.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또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및 장애등급자(국가보훈처 등록)
	기타	기타 특별전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·중·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(예정자 포함)한 재외국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12년 미만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·중·고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수학 연한과 관계없이 인정 ※ 전학 등의 사유로 재학 기간이 12년에서 1학기가 부족한 경우에도 지원 자격 인정
		북한이탈 학생전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가', '나'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가.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(조기졸업예정자 제외)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
정시 (나) 군	수능 위주	일반전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

Ⅶ.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전형 및 방법

모집 시기	전형 유형	전형명	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전형 및 방법	
수시	학생부 교과	학교장추천전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1호 ~ 제9호 조치: 지원 자격 제한 (추천 불가) 	
	학생부 종합	교직인성우수자전형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1호 ~ 제9호 조치: 1단계 평가 시 '부적격' 처리
		기회균형 특별전형 I	국가보훈 대상자전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1호 ~ 제9호 조치: 지원 자격 제한
			농어촌 학생전형	
		기회균형 특별전형 II	기초생활 수급자등 전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1호 ~ 제9호 조치: 1단계 평가 시 '부적격' 처리
	장애인등 대상자전형			
	기타	기타 특별전형	북한이탈 학생전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1호 ~ 제9호 조치: 지원 자격 제한
재외국민 특별전형				
정시	수능	일반전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1호 ~ 제9호 조치: 1단계 평가 시 '부적격' 처리 	
		수시 미충원에 의한 이월 전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1호 ~ 제9호 조치: 이월한 전형의 조치 사항에 따름 	

※ 검정고시 출신자 중 고교 재학 사실이 있거나 학교생활기록부 일부가 존재하는 경우, 고교 재학생 및 졸업자와 동일한 조치로 반영함 (재학 기간 동안의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필수)